

의안번호	2207751
의 퇴 인	김문수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3.
추계번호	25C0328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0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2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 분석과 조사·연구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,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3조(고독사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·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,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8조(민관협력)	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,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확보와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1조(비용의 지원 등)	국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
3	안 제10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 등)	
4	안 제12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 분석과 조사·연구 등)	
5	안 제13조(고독사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
6	안 제1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	
7	안 제18조(민관협력)	
8	안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	
9	안 제21조(비용의 지원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방 및 관리 대상(고독사)에 “사회적 고립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 시행 시 개정법률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실시

하거나 신규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전체 인구 대비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는 인원을 별도로 추계한 적이 없고,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존 고독사 예방·관리 사업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
 - 안 제18조를 제외한 재정수반요인은 모두 현행법에 있는 규정으로 보건복지부 등은 현행법에 따라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 실시, 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, 시스템 구축·운영, 교육·홍보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음
 - － 예방 및 관리 범위에 “사회적 고립”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사업의 변경 여부 및 추가재정소요 등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음
 - 안 제18조에 명시된 민관협력의 경우 현행법에 관련 규정은 없으나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의 유사 체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
 - 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로, 2024년 6월 기준 전국 228개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각각 구성되어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